KOSHA GUIDE

C - 70 - 2012

- (가)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
 -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내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있을 때
 -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인접지역의 인화성 물질에 발화될 수 있을 때
 - 인화성 물질이 금속 칸막이, 벽,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
 - 인화성 물질이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수 있을 때
 -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
 -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

(나) 화재감시인의 임무

- 화재감시인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 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.
- 화재감시인은 주위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화재감시인은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.
- 화재감시인은 용접·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이상 계속하여 화재발 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기능공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는 물질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비치하고 "경고·주 의"표지판과 라벨을 설치하여야 한다. 화기금지, 흡연금지, 인화성물질 경 고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우레탄과 같은 단열재가 설치된 후에는 즉시 석고보드 등과 같은 방화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방화판이 설치될 때까지 근로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. 만약 방화판이 설치되기 전에 근 로자들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한다면 화재감시자를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.
- (6) 인화성 물질 취급 등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는 비상 대피로 를 확보하여야 한다. 또한 정전이 되더라도 작동되는 경보설비와 외부와의 연락장치, 유도등, 비상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